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SM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19

수출바우처 사업설명회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 중소기업진흥공단 | KOTRA

2019. 07. 30.

목차

1. 사업개요

- 1.1 사업개요
- 1.2 총괄수행기관
- 1.3 수행기관 자격 및 수행가능 서비스
- 1.4 개선방향

2. 디자인 개발 지원범위

- 2.1 분야별 기준단가
- 2.2 유의사항

3. 검수평가

- 1.1 정산 절차
- 1.2 검수평가구비 서류
- 1.3 유의사항

Chapter 01

사업개요

01 사업개요

목적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중견기업이 해외진출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지원을 통해 수출 경쟁력 강화

역할정의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기관이 수출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정한 자격 등을 평가하여 지정한 기관/기업으로서, 바우처를 발급 받은 참여기업의 서비스 신청을 받아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는 역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벤처기업부

관리/운영기관

KOTRA · 중소기업진흥공단

01 사업개요

01 사업개요

02 총괄수행기관

특정 수출지원 서비스 분야에 대해
관리기관으로부터 수행기관의 선발과
관리, 서비스 총괄 관리를 위탁 받은
공공기관

역할

총괄수행기관은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선정된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의 계약 내용 검토 및 승인.
- 수행기관의 수행결과물 검토 및 승인
- 총괄수행기관 관리 분야에 대한 중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선발 수행기관에 대한 청렴교육 및 부정집행 방지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평가위원회

디자인 개발 및 홍보동영상 분야는 총괄수행기관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서비스 결과물에 대해서는 총괄수행기관의 검수를 거쳐 최종 정산 여부 및 정산금액을 운영기관이 결정한다.

평가위원회는 수행기관을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수행기관의 서비스 수행능력 및 수준
- 유사서비스 수행실적 등 수행경험
- 서비스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 서비스 활동계획의 체계성 및 실행가능성
- 서비스 사후관리 방안의 우수성
- 단가 및 산출근거의 적절성

01 사업개요

03 수행기관 자격, 수행가능 서비스

수행기관 자격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 한국디자인진흥원 전문회사 신고(신청마감일 기준)에 시각, 포장, 멀티미디어, 제품디자인분야에 신고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중 대표자 이외 디자인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한 기업
- 동영상 제작 기업 중 대표자 이외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한 기업 (단, 동영상 제작에 관련된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시, 신청불가.)

수행가능서비스

| | 수행가능 분야 | 비고 |
|----------|-----------------------------------|---------------|
| 시각·포장디자인 | 종이카탈로그, 포장디자인 | 인쇄비 지원 불가 |
| 멀티미디어 | 전자카탈로그, 홈페이지, 모바일 앱, 온라인 상품페이지 | - |
| 제품디자인 |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 워킹목업, 기구설계 제외 |
| 홍보동영상 | 홍보동영상 | - |
| BI·CI | BI·CI | 브랜드개발, 네이밍 제외 |

- 위 분야 이외의 분야는 디자인개발 사업으로 지원 불가능합니다.(판촉물 제작, 단순 목업제작, 3D소스 제작 등)

01 사업개요

04 개선방향

| | 2018 | 2019 |
|-----------|-------------------------------|--------------------------------------|
| 수행기관 모집 | 연 2회 모집 | 수시 모집체계 전환 및 격월 평가제 도입 |
| 협약기간 | 1년 | 협약일로부터 2년 |
| 수행 분야 | 시각/포장, 멀티미디어, 제품/포장, 홍보동영상 | 시각/포장, 멀티미디어, 제품/포장, 홍보동영상, BI·CI |
| 수행기관 수임한도 | 전년도 매출액 2배 | 전년도 매출액 4배 |
| 분야별 금액 한도 | 개발금액 한도 有 | 개발금액 한도 有(전년과 동일) |
| 수행기관 재선정 | - | 협약 종료 1개월 전 제출 자료 평가 |

유의 사항

- 최종선정, 협약·등록일 및 연간 운영일정 등은 실제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수시 모집이나 선정은 격월제로 운영, 평가 기간 다음 달 첫째 주 선정 발표.
- 선정 후 협약일로부터 2년 활동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 서비스 분야를 추가 확대 시에도 종료일은 변동 없이 기업 기준으로 운영(서비스 기준 X)

Chapter 02

디자인 개발 지원 범위

02 디자인 개발 지원범위

01 분야별 기준단가

| | 기준단가 | 참여기업 한도 |
|----------------------|------------------------------------------------------------|--------------------|
| 외국어 종이 카탈로그 | 28p 600만원 이내 | 3건 |
| 외국어 포장 디자인 | A안 600만원 이내 B안 800만원 이내 C1안 200만원 이내 C2안 350만원 이내 | 1건 (언어 3종까지 인정) |
| 외국어 홈페이지 | A안 700만원 이내 B안 2,000만원 이내 | 1건 (언어 3종까지 인정) |
| 외국어 전자 카탈로그 | 최대 600만원 이내 | 3건 |
| 외국어 모바일 앱 | 최대 500만원 이내 | 3건 |
| 외국어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 최대 100만원 이내 | 3건 |
| 제품디자인 | 렌더링 지원 1,500만원 이내 목업 지원 3,000만원 내외 | 1건 |
| 외국어 동영상 | A안 700만원 이내 B안 2,000만원 내외 | 1건 |
| BI·CI | A안 2,000만원 이내 B안 2,500만원 이내 C안 3,000만원 이내 | 1건 |

- 모든 단가는 VAT 미포함 단가이며, 인쇄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네이밍, 브랜드 개발은 디자인 수행기관 지원 범위가 아닙니다.(일반분야-브랜드개발/관리로 신청.)

02 디자인 개발 지원범위

01 종이카탈로그

- 스프레드(양쪽) 형식 pdf 제출

금액 한도 : 600만원 이내

기준 분량 : 28p

기업 한도 : 1기업당 3건



※ Lynx Lookbook Template by Slide Station

종이카탈로그

- 제2, 제3외국어 추가할 경우, 제 1외국어 개발비용의 최대 50% 이내를 번역 및 편집 비용으로 인정. 참여기업에서 번역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는 편집 비용만 인정.
- 포스터 및 배너 등 일반 판촉물, 매뉴얼은 지원 불가

02 디자인 개발 지원범위

01 포장디자인 A안

- 전개도, 샘플 촬영 이미지 pdf 제출

금액 한도 : 600만원 이내

기준 분량 : 최소 3가지 제품

기업 한도 : 1기업당 1건 / 언어 3종

※ 포장디자인 A-C안 중 1건 가능



※ 샘플은 전개도의 지기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일반 레이저 프린터기로 출력하여 접은 패키지의 촬영본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 결과물 특성상 후가공이 많이 포함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기입 바랍니다.

포장디자인 A안

- 각기 다른 제품을 비슷한 이미지 Variation 작업. 최소 3가지 이상으로 색상 혹은 규격 전개 박스 패키지 형태를 기본으로 하며, 라벨 및 파우치 등은 C안에 해당.
- (참여기업)1기업당 1개 / 언어 3종 가능.
- 제2, 제3외국어 추가할 경우, 제 1외국어 개발비용의 최대 50% 이내를 **번역 및 편집 비용**으로 인정 참여기업에서 번역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는 편집 비용만 인정.

02 디자인 개발 지원범위

01 포장디자인 B안

- 전개도, 샘플 촬영 이미지 pdf 제출

금액 한도 : 800만원 이내

기준 분량 : 최소 3가지 제품

기업 한도 : 1기업당 1건 / 언어 3종

※ 포장디자인 A-C안 중 1건 가능



※ 샘플은 전개도의 지기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일반 레이저 프린터기로 출력하여 접은 패키지의 촬영본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 결과물 특성상 후가공이 많이 포함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기입 바랍니다.

포장디자인 B안

- 각기 다른 제품을 다른 이미지 Variation 작업. 최소 3가지 이상 전개 박스 패키지 형태를 기본으로 하며, 라벨 및 파우치 등은 C안에 해당.
- (참여기업) 1기업당 1개 / 언어 3종 가능.
- 제2, 제3외국어 추가할 경우, 제 1외국어 개발비용의 최대 50% 이내를 **번역 및 편집 비용**으로 인정 참여기업에서 번역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는 편집 비용만 인정.

02 디자인 개발 지원범위

01 포장디자인 C안

- 결과물 pdf파일 제출

C-1

금액 한도 : 200만원 이내

기준 분량 : 최소 1가지 제품

기업 한도 : 1기업당 1건 / 언어 3종

※ 포장디자인 A~C안 중 1건 가능

C-2

금액 한도 : 350만원 이내

기준 분량 : 최소 2가지 제품

기업 한도 : 1기업당 1건 / 언어 3종

※ 포장디자인 A~C안 중 1건 가능

※ C안에 해당하는 라벨은 캔, 병류 등에 부착 또는 출력하는 패키지입니다.

성분표 등의 단순 번역 라벨 스티커, 포장용지 등 지원 불가능.



포장디자인 C-1안

- 동일 디자인(이미지) 라벨 또는 파우치 1가지 이상 전개
- (참여기업)1기업당 1개 / 언어 3종 가능.



포장디자인 C-2안

- 다른 이미지 Variation으로 각각 다른 제품의 라벨 또는 파우치 디자인의 색상 및 규격 전개 2종 이상
- (참여기업)1기업당 1개 / 언어 3종 가능.

- 제2, 제3외국어 추가할 경우, 제 1외국어 개발비용의 최대 50% 이내를 **번역 및 편집** 비용으로 인정
참여기업에서 번역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는 편집 비용만 인정.

02 디자인 개발 지원범위

01 전자카탈로그

exe, html 등 실행 파일 제출

금액 한도 : 600만원 이내

기준 분량 : 28p

기업 한도 : 1기업당 3건



※ <https://www.paynesmarine.com/catalog/>

전자카탈로그

- 단순 E-book 형태 지원 불가
e-book 리더기, 실행 서비스 업체를 통해 제작된 결과물, 프레젠테이션 방식의 인터페이스(PPT, Prezi) 지원불가.
- 카탈로그 단독으로 시작/종료 가능.
단순 나열식, 직렬식 구조를 지양. 병렬식(다중구조) 혹은 웹 구조로 화면 구성
- 제2, 제3외국어 추가할 경우, 제 1외국어 개발비용의 최대 50% 이내를 번역 및 편집 비용으로 인정
참여기업에서 번역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는 편집 비용만 인정.

02 디자인 개발 지원범위

01 모바일 앱

- 전체 화면 GUI pdf 또는 apk 제출

금액 한도 : 500만원 이내

기준 분량 : (기업간 협의)

기업 한도 : 1기업당 3건



※ Wireframe: A Phase of Mobile App Design You Can't Miss by Shivam Srivastav, 2017. 09. 26.

모바일 앱

- 프로그래밍,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한 디자인에 대한 부분만 지원 가능
- 최종 결과물은 전체 화면이 확인 가능한 와이어프레임 Pdf 혹은 참여기업 개발이 완료된 경우 Apk 파일 제출.
- 제2, 제3외국어 추가할 경우, 제 1외국어 개발비용의 최대 50% 이내를 번역 및 편집 비용으로 인정
참여기업에서 번역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는 편집 비용만 인정.

02 디자인 개발 지원범위

01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 결과물 pdf파일 제출

금액 한도 : 100만원 이내
기준 분량 : (기업간 협의)
기업 한도 : 1기업당 3건



※36 Best Landing Page WordPress Themes 2019 January 10, 2019 by Charlie Livingston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 디자인 요소가 없는 단순 사진 촬영 및 이미지 나열식 편집은 지원 불가.
- 제2, 제3외국어 추가할 경우, 제 1외국어 개발비용의 최대 50% 이내를 번역 및 편집 비용으로 인정
언어 추가 작업 시 개별 서비스로 협약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에서 번역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는 편집 비용만 인정.

02 디자인 개발 지원범위

01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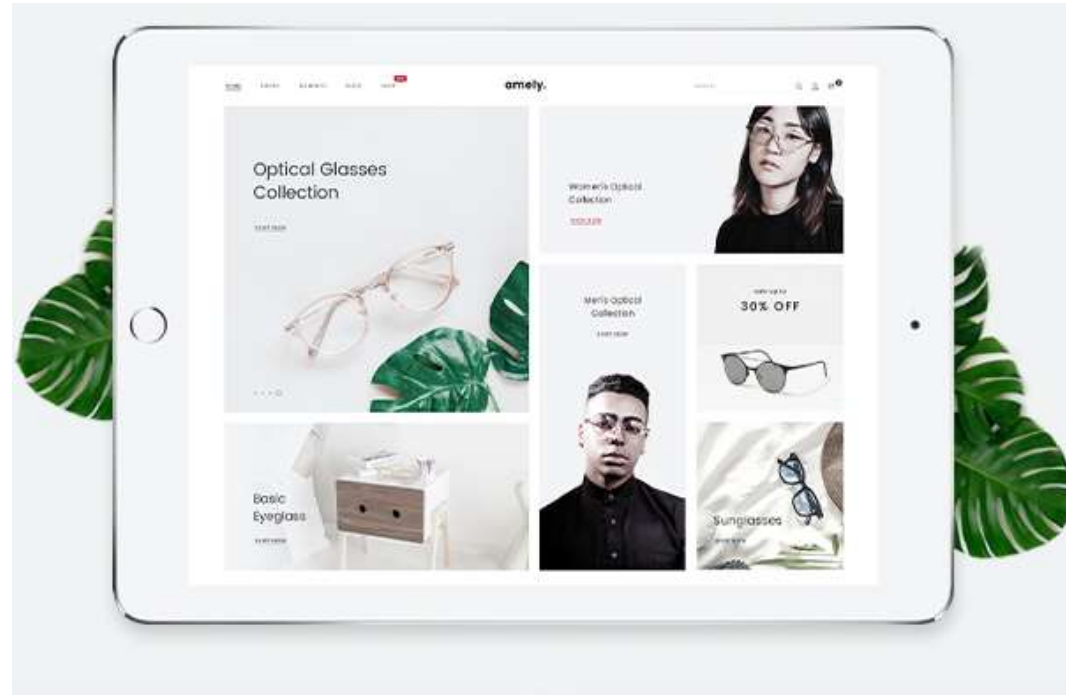
- 접속 url, 관리자 계정이 적힌 txt파일
- 주요 화면 GUI pdf파일

A안

- 금액 한도 : 700만원 이내
- 기준 분량 : (기업간 협의)
- 기업 한도 : 1기업당 1건 / 언어 3종
- ※ 홈페이지 A-B안 중 1건 가능

B안

- 금액 한도 : 2,000만원 이내
- 기준 분량 : (기업간 협의)
- 기업 한도 : 1기업당 1건 / 언어 3종
- ※ 홈페이지 A-B안 중 1건 가능



※ [https://themeforest.net/_ Theme Move](https://themeforest.net/_Theme Move)

홈페이지 A안

- 단순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 템플릿, 솔루션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타 기업과의 레이아웃 및 디자인 유사성 문제에 대하여 반드시 참여기업 측에 사전 안내.
- 제2, 제3외국어 추가할 경우, 제 1외국어 개발비용의 최대 50% 이내를 번역 및 편집 비용으로 인정 참여기업에서 번역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는 편집 비용만 인정.

홈페이지 B안

- 관리자 페이지를 포함하여 결제 모듈 등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함.
- 템플릿을 활용하지 않은 자체 개발일 경우만 인정.
- 최종 결과물 제출시 관리자 ID/PW 포함하여 제출

02 디자인 개발 지원범위

01 홍보동영상

- Mp4 등 영상파일
 - 스토리보드, 촬영장 사진 포함
- 개발과정 ppt pdf 파일

A안

- 금액 한도 : 700만원 이내
- 기준 분량 : (기업간 협의)
- 기업 한도 : 1기업당 1건

※ 동영상 A~B안 중 1건 가능

B안

- 금액 한도 : 2,000만원 내외
(최대 5,000만원 이내)
 - 기준 분량 : (기업간 협의)
 - 기업 한도 : 1기업당 1건
- ※ 동영상 A~B안 중 1건 가능

동영상 A안

- 일반형
단순 촬영(인터뷰, 상품 사용법 등), 이미지 편집, 템플릿 활용, 기존 소스를 활용한 영상 등
- 템플릿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타 기업과의 레이아웃 및 디자인 유사성 문제에 대하여 반드시 참여기업 측에 사전 안내.

동영상 B안

- 고급형
TV등 매체에 나오는 홍보 영상, B2B, Full 3D 영상, 자체 제작한 그래픽 영상, 특수 촬영 영상 등

02 디자인 개발 지원범위

01 제품디자인

- 랜더링(목업 촬영) 이미지 pdf
- 시장조사 등 개발 과정 ppt pdf파일 제출

A안

- 금액 한도 : 1,500만원 이내
- 기준 분량 : (기업간 협의)
- 기업 한도 : 1기업당 1건

※ 제품디자인 A~B안 중 1건 가능

B안

- 금액 한도 : 3,000만원 내외
(최대 5,000만원 이내)
- 기준 분량 : (기업간 협의)
- 기업 한도 : 1기업당 1건

※ 제품디자인 A~B안 중 1건 가능



제품디자인 A안

- 랜더링 지원
제품 용기, 기존 제품에 라벨을 입히는 식의 결과물은 지원 불가. (포장디자인에 해당)



※ Yanko design - form Beyond Function

제품디자인 B안

- 디자인 목업 지원
디자인 목업 지원으로 기구 설계 및 워킹 목업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최종 검수평가 시 목업을 지참하여 발표평가 진행.
(발표평가 일정은 접수 이후 개별 안내.)

02 디자인 개발 지원범위

01 CI · BI

- 매뉴얼 북, 어플리케이션 pdf
- 시장조사 등 개발 과정 ppt
pdf파일 제출

A안

금액 한도 : 2,000만원 이내
기준 분량 : 어플리케이션 10종 이상
기업 한도 : 1기업당 1건

※ CI/BI A-C안 중 1건 가능

B안

금액 한도 : 2,500만원 이내
기준 분량 : 어플리케이션 15종 이상
기업 한도 : 1기업당 1건

※ CI/BI A-C안 중 1건 가능

C안

금액 한도 : 3,000만원 이내
기준 분량 : 어플리케이션 20종 이상
기업 한도 : 1기업당 1건

※ CI/BI A-C안 중 1건 가능

CI · BI

- 심볼, 로고, Basic Identity, 매뉴얼 제작 필수, App아이콘 등 Application Identity 10 ~ 20 종.
- 참여기업 기존 디자인을 결과 보고서에 반드시 첨부
- 브랜드 개발, 네이밍을 제외한 로고 개발에 대한 디자인 비용 지원. 브랜딩, 네이밍은 브랜드 개발 수행기관의 서비스로 협약 및 지원 가능
- 협약을 진행하는 참여기업이 아닌 타 기업의 BI/CI 지원 불가능.

02 디자인 개발 지원범위

02 유의사항

유의사항

- 국문 단독 제작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결과물을 수출 이외의 내수용으로 제작, 사용하실 경우 해당 서비스의 정산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9년도 사업 중 내수기업지원 사업은 내수용 디자인개발지원이 아닙니다. 국문 지원 불가능합니다.)
 ex)1개 협약을 진행하여 각 국문 1권, 영문 1권으로 제작할 경우, 국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
 동영상의 경우 한국어 나레이션 등의 비용 제외.
- 홈페이지 솔루션, 동영상 템플릿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실 경우, 타 업체와 레이아웃 및 디자인 유사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반드시 참여기업 측에 **사전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 모든 계약은 부가세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부가세는 이후 참여기업에서 별도 입금 받아야 합니다. 부가세를 포함하여 협약할 경우, 차후 정산에서 해당 금액은 제외됩니다.
- 서비스 공급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제공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서비스일 경우 참여기업의 동의를 얻어 공급가액의 30%를 선금으로 요청 가능합니다. (단, 참여기업이 **인천/경기** 지역 수출성공패키지, 수출성장사업은 신청 불가능)

Chapter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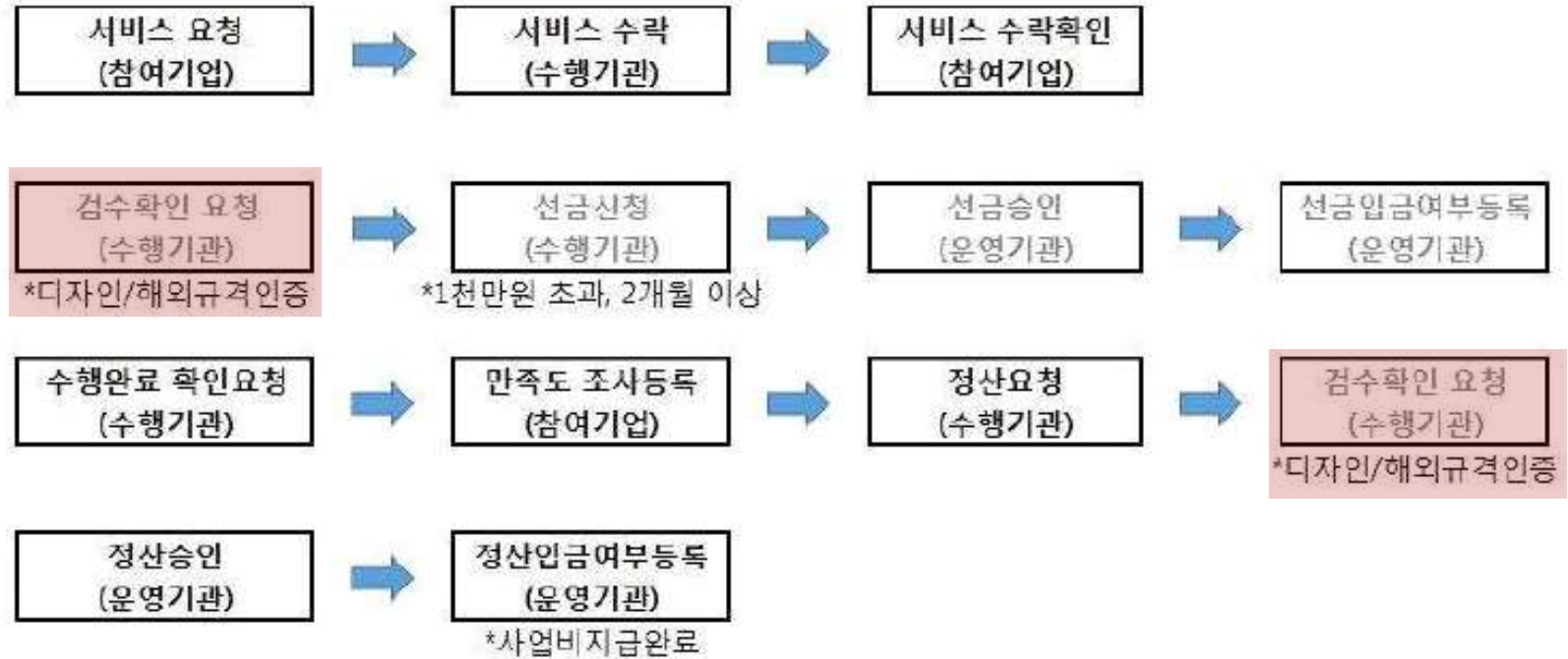
검수평가

03 정산 및 검수평가

01 진행 절차

선금요청, 최종정산요청 시
총괄수행기관의 검수 이후
정산 절차 진행 가능

○ 정산 절차



- 先 집행 後 정산 원칙

03 정산 및 검수평가

02 검수평가 절차

결과물 접수

결과물 제출 및 결과 보고는 4주~6주마다 정기적으로 접수 안내를 드립니다.

결과물이 완성된 과제를 기간 내에 접수하시면, 접수기간 이후부터 각 분야별로 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4~6주간 검수평가를 진행합니다.

※ 참여기업의 협약기간 1개월 이전에는 결과물이 모두 완성되어야 합니다.

(협약 종료일이 20년 4월인 경우, 20년 3월 접수기간 내에 모두 제출하여야 함.)

진행 절차

◆ 웹하드 제출

검수평가를 위한 결과물, 결과보고서를 웹하드에 업로드해주세요.

웹하드 ID와 접수기간은 참여기업 사업연도 별로 상이하므로 참여기업의 사업기간을 확인 바랍니다.

*2018년도 마지막 차수 선정기업은 2019년도 11월 말에 종료됩니다. (10월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양사 협약시작일과 종료일이 모두 19년도에 이루어졌더라도 2018년도 선정 참여기업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바우처 사이트 요청

검수평가 이후 정산 절차 진행을 위해 결과물, 결과 보고서, 정산자료를 업로드해주세요.

*웹하드에 제출한 자료를 운영기관에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보고서와 결과물은 반드시 사이트에도 접수되어야 합니다.

03 정산 및 검수평가

02 검수평가 절차

검수평가 결과

평가결과는 바우처 사이트(서비스 진행정보 확인)를 통하여 전달됩니다.

검수결과에 따라 **보완요청**(정산서류 또는 결과물)/ **검수승인**(정산요청)으로 진행되며 검수승인 이후 정산 절차는 사업별 운영기관(지방 중진공, 지방청, KOTRA, KIAT) 에서 진행됩니다.

- **평가결과 성공**

정산자료 보완 요청 혹은 정산자료에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승인.

- **평가결과 보류**

결과물이 확인 불가능하거나 개발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여 평가 연기된 상태입니다.
전달드린 내용 확인, 문의 후 재평가를 진행합니다. *필요 시 발표평가로 이루어집니다.

- **평가결과 금액조정**

제출 받은 결과물 상으로 해당 협약 금액으로 진행될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정량적으로 기준단가에 미달하는 경우 일부 금액조정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정된 금액으로 인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부가세에 대한 서류, 정산요청금액을 조정된 금액으로 수정하여 정산요청 가능합니다. 불인정하는 경우 추가자료 제출 또는 발표평가로 재평가 진행 가능합니다.

*평가 결과는 과제마다 다름으로 필요 자료는 개별문의

03 정산 및 검수평가

02 검수평가 구비 서류

결과물

웹하드 및 바우처 사이트 제출

전체 내용이 확인 가능한 결과물
파일을 업로드.

단, 바우처 사이트에 업로드 할
경우 영상 파일은 일부 화면
캡처파일 업로드 가능

결과 보고서

웹하드 및 바우처 사이트 제출

디자인 진흥원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 직간접 연구비를
반드시 기술

정산 증빙자료

바우처 사이트 제출

세금계산서
부가세입체확인증
수행기관 통장사본
견적서 또는 세부 산출내역서

(내수, 초보, 유망 / 고성장,
아시아하이웨이 사업의 경우
산출내역서, 이외 사업은 견적서 제출

단, 참여기업 소재지가 부산인
수출성장사업, 수출성공패키지
사업은 표준계약서 제출)

03 결과보고 안내

02 결과보고서 양식

공지사항 241
 (2018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디자인분야 검수평가
 결과물 접수기간 안내) 참고

| 작성요령 |
|-----------------------------------------------------------------------------------------------------------------------------------------------------------------------------------------------------------------------------------------------------------------------------------------------------------------------------------------------------------------------------------------------------------------------------------------------------------------------------------------------------------------------------------------------------------------------------------------------------------------------------------------------------------------------------------------------------------------------------------------------------------------------------------------------------------------------------------------------------------------------------------------------------------------------------------------------------------------------------------------------------------------------------------------------------------------------------------------------------------------------------------------------------------------------------------------------------------------------------------------------------------------------------------------------------------------------------------|
| <p>○ 연구원의 인건비 계산기준은 신청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따라 참여율 별도 계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 실지급액 × (참여개월 / 12) × 참여율 ※ 실지급액 =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최근월 급여액 × 12 × 참여율로 산정한다.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비정규직원은 아래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이상 : 3,000천원×12×참여율 - 박사과정 : 2,000천원×12×참여율 - 석사과정 : 1,500천원×12×참여율 - 학사과정 이하 : 1,000천원×12×참여율 ※ 당해연도 참여연구원의 과제참여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 인건비는 상기 계산액 × (참여개월 / 12)로 산정한다. <p>○ 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인력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산한다.</p> <p>○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정부지원분 이외의 비용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산정한다.</p> <p>○ 직·간접 연구비 작성 요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연구비 내역은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재료 및 외주 계약, 기자재 사용료만을 인정함. ※ 간접연구비중 제삼비는 건물임대료, 공공요금, 계세공과금 제외 (간접연구비는 총 개발비용의 10%를 넘지못함) - 인터넷 등 검색 요금은 “정보수집비”에 포함하며, 봉사료는 제외함. ※ 감가상각비(경매법) 산정방법(1,000원 미만은 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가액 × 20% × $\frac{\text{개발기간}}{365}$ <p>○ 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들의 세부전문 담당분야 및 대학졸업년도(직급제상의 기준)는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참여기간(개월)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계산 |

2018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홍보동영상·디자인개발 최종보고서

| | | |
|-------------|---------------------------------------------------------------------------------------------------------------------|-------------------------------------------|
| 수행기관명 | 참여기업명 | 사업명 기재 (수출성공패키지, 아시아하이웨이등) 참여기업명 기재 |
| 과제명 | (ex ○○○기업 홍보를 위한 종이 카탈로그 24p) | |
| 구분 | (ex 종이카탈로그) | 구매번호 - |
| 개발 필요성 | 1.기존 참여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이미지 첨부(필수 첨부 / 신규개발 시 신규개발로 기입). 2.개선방향 간략히 설명 <b style="color: red;">개발 이전 이미지 반드시 첨부 | |
| 계약 범위 | ex) _____카탈로그 ____p, 촬영(____컷 / ____일) 및 외국어 번역 감수 위 내용은 참고 사항이며 업체의 계약 내용에 맞게 임의로 기술바랍니다. | |
| 개발 내용 (이미지) | 시안 이미지 일부 첨부 | |
| | 개발 시안 이미지 일부 첨부 (캡처 혹은 사진 이미지) | |
| 개발 내용 (이미지) | 최종 결과물 이미지 | |
| | 1. 최종 Output 선정 이유 간략히 서술 2. 결과물 이미지 첨부 (캡처 혹은 사진 이미지, 제품디자인의 경우 목업 이미지 첨부 바람) | |
| 기대효과 | | |

03 정산 및 검수평가

02 결과보고서 양식

인건비 100%으로 기입
불가능하며 반드시 직/간접
연구비 내용을 기입바랍니다.

| | | | | | | | |
|-----------------------------------------------------------------------|---------------|---------------|----|----|--------|--------------------------|-----|
| 2018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홍보동영상·디자인개발 결과에 대한 개발 사업비 산출내역을 제출합니다. (단위 : 원) | | | | | | | |
| 총 개발 사업비 | | | | | | | |
| 비 목 | 지원 내용 | | | 금액 | 구성비(%) | | |
| 1. 인 건 비 | | | | | | | |
| 2. 직접연구비 | | | | | | | |
| 3. 간접연구비 | | | | | | | |
| 계약금액 (VAT별도) | | | | | 100% | | |
| 직·간접 연구비 | | | | | | | |
| 구분 | 내역 | 종 명 | 단가 | 수량 | 금액 | 용도 (당해연구사업에 관련내용) | 비 고 |
| 계 직 연구비 | 디자인재료 | 이미지/템플릿구입 | | | | | |
| | 계 | | | | | | |
| | 디자인외주 제작경비 | 번역비, 외주 비용 기입 | | | | | |
| | 계 | | | | | | |
| | 기자재사용료 | | | | | 간가장작 비 적용(징액 별) | |
| 계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간 직 연구비 | 시장조사 및 정보수립비 | 시장조사 비용 등 | | | | | |
| | 제작비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합 계 | | 원 | | | | | |
| 인건비 소요 명세 | | | | | | | |
| 성명 | 주요 이력사항 및 경력 | | | 개발 기간 (개월) | 본 과제 참여율 (%)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행기관 대표 : (인) 참여기업 대표 : (인) | | | |
|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 | | | | 양사 직인 반드시 날인 | | | |

03 정산 및 검수평가

03 유의사항

참여제한

관리기관은 참여기업 또는 수행기관이 다음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제 28조의 2)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받은 경우 (3년 이내 참여 제한, 해당사업비 환수)
- 참여기업에 부당알선, 고의적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사업수행에 혼선을 초래하였거나, 참여기업에 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년 이내 참여제한, 해당사업비 환수)
- 바우처 정산금액이 서비스 수행목적 외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횡령, 편취, 유용, 타목적 사용 등) (3년 이내 참여제한, 해당사업비 환수)
-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감사기관으로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3년 이내 참여제한, 해당사업비 환수)
- 부정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년 이내 참여제한, 해당사업비 환수)
- 바우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년 이내 참여제한, 해당 사업비 환수)
- 바우처 관리기관,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에 부당한 청탁을 통해 수행기관에 선정되거나 서비스를 수임한 경우 (2년 이내 참여제한)
- 바우처 관리지침 및 협약위반사안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보받고 불이행한 경우 (1년 이내 참여제한)
- 참여기업 리스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참여기업에게 과도 한 영업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 참여제한)
- 법령에 따른 중앙부처 관련규정 및 지침, 공고등을 위반한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내 참여제한)

03 정산 및 검수평가

03 유의사항

참여제한

- 최종 제출된 수행결과물 관련 (수행기관 3년 이내 참여제한, 해당 사업비 환수)
 1. 참여기업과 담합을 통해 서비스를 부정하게 제공하고 바우처 정산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참여기업에게 환급한 경우
 2. 서비스 수행결과물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한 경우
 3. 수행기관에서 보유한 기존 결과물을 과도하게 재활용하거나 재가공하여 제출한 경우
 4. 참여기업의 기존 결과물을 서비스 결과물로 재가공하여 정산 받은 경우
 5. 공공기관 등 외부기업 자료가 정확한 출처 없이 과도하게 표절된 경우
 6. 참여기업과의 계약서 및 동의가 필요한 결과물 등을 허위로 작성된 경우
 7. 서비스 수행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8.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재하청한 경우
 9. 선정분야와 관련이 없거나, 수출과 무관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10. 바우처사업의 정책적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물을 제공한 경우
 11.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한 수행을 한 경우

- 참여기업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 바우처 정산금액을 일부 또는 전부 환급받은 경우 (3년 이내 참여제한, 해당 사업비 환수)
 - 참여기업의 기존 결과물을 서비스 결과물로 수행기관에게 제공한 경우 (3년 이내 참여제한, 해당 사업비 환수)
 - 서비스 결과물을 국내마케팅용으로 활용한 경우 (1년 이내 참여제한, 해당 사업비 환수)

03 결과보고 안내

유의사항

03 유의사항

- 최종 디자인 결과물은 참여기업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관리지침 제 22조 6항)
단, 수행기관 고유의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개발결과물 및 이미지소스 등을 참여기업의 타 작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지, 폰트 등의 이용 가능 범위를 참여기업에게 납품 시 안내 바랍니다.)
- 이전 사업 결과물을 중복으로 이용 시 수행기관 제재 및 검수평가 시 실패과제로 처리됩니다.
- 가격 담합 · 바우처 지원금 부정 이용 · 참여기업 부담금 대납 · 타 디자인업체에게 재 하청 등의 행위 적발 시 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됩니다.
- 검수평가 시 공지한 개발 범위에 미달되는 경우 금액 조정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참여-수행기관일 경우에도 반드시 각각의 서비스별로 협약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 각 사업별 지침, 개정, 정책 등에 관해서는 바우처 사이트 공지사항의 매뉴얼을 참고 바랍니다.

03 결과보고 안내

03 유의사항

- 향후 서비스 결과물 평가 및 참여 기업 만족도 조사 등을 활용, 수행기관을 평가하고 부실한 수행기관의 경우 사업 참여 제한.

-연 1회 현장점검 실시 후 부적합 발생 시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운용지침 및 세부사업별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신청 및 선정 후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수행기관에게 있음
- ❖ 세부사업 계획, 수행기관 매칭, 집행 및 정산, 결과보고서 검수 등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운용지침 및 세부사업별 운영지침을 따름

문의처

산업육성실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담당자]

주소 :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7층 730호

(야탑동 344-1)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연락처

검수평가, 단가 관련 : 031-780-2214

선정평가, 선금, 서비스관련 : 031-780-2105

심층상담 : 031-780-2146

감사합니다